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. 1. 10 선고 2017가단770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17. 12. 13.

판결 선고2018. 1. 10.

주 문

1. 원고에게, 전남 고흥군 F 전 1,547㎡ 중 피고 B은 1/9 지분, 피고 C, D, E는 각 2/27 지분에
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2. 12. 30. 접수 제14570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피고들은 2017. 12. 12.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으므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.

판사설승원

별지